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김성원 · 김위상 · 배준영

박충권 · 송석준 · 고동진

정동만 · 박성훈 · 김정재

안철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주민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장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 조성하는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설치·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 조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금 설치 및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생 략)  <u>&lt;신 설&gt;</u></p>	<p>제4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 조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금 설치 및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u></p>